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31
----------	-------

발의연월일 : 2023. 12. 4.

발 의 자 : 이탄희 · 허숙정 · 권철승
박성준 · 한준호 · 박주민
정성호 · 김교홍 · 홍영표
김상희 · 강득구 · 안규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금액 공탁’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

써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공탁 고지 및 의견청취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u><신설></u>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